문서번호	교통행정과-32676
결재일자	2016.6.3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	관	교통행정팀장	교통행정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
임수호	₫	代이선주	장용훈	06/30 김해성	
협 조					

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계획



안 전 건 설 교 통 국 (교통행정과)

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계획

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에 있어 대상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, 사전홍보 강화 및 미사용신고 안내 등을 통해 불편민원을 최소화하고 정확성에 근거한 부과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

☑ 도입목적 및 연혁

□ 도입목적

○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자발적 교통수요관리를 유도

□시행연혁

- O '90.1.13.: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신설(도촉법 개정)
- O '90.9.25.: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, 징수방법 등 규정(시행령 개정)
- O '90.12.1.: 교통유발부담금 최초 부과
- O '92. 5.6.: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

Ⅲ 관 련 규 정

- O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~ 제29조
- O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



○ 부과대상: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,000m²이상인 시설물(주거용 제외)

O 대상기간: 2015. 8. 1. ~ 2016. 7. 31.(1년간)

O 부과기준일: 2016. 7. 31.

O 납부의무자: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

O 납부기간: 2016. 10. 16. ~ 2016. 10. 31.

O 부담금산정: 연면적 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

IV

제 도 현 황

□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상향

O 면적별 차등부과에 따라 '20년까지 면적비율별 최대 2,000원으로 단계적 인상

〈기 존〉

〈개	정	\rangle

V/1 L/			(/ 11 - 0 /							
부과기준	'13년		부과기준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3천㎡ 미만 또는 3천㎡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	350원	= =	3천 <i>m³</i> 이하	700원	700원	700원	700원	700원	700원	700원
3천m²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 이상	· 상 700원	→	3천 <i>m²</i> 초과 ~3만 <i>m²</i> 이하	700원	800원	900원	1,000원	1,100원	1,200원	1,400원
			3만m² 초과	800원	1,000원	1,200원	1,400원	1,600원	1,800원	2,000원

- ※ '15년도 적용부담금은 '15.8.1.~16.7.31.까지 부과분으로 실제 부과· 징수는 '16년에 이루어져 '16년 결산금액으로 표시됨
- ※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,000m²이상 3,000m² 미만 : 350원



2016년 중점 추진 사항

□ 대학교 내 상업시설 부과 실시

(1) 추진 배경

- O 대학교 내 상업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및 부과 필요
 - 교육용시설로 면제되어 왔던 대학 내 상업시설을 교육용 시설로
 볼 수 없으며, 이 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
 (2016.5.15.서울고법.2015누60664)
 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또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이 그용도에 따라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토록 규정
 - 이에 따라 대학교 내 상업시설에 대한 실지 조사를 통해 실사용용도 파악 후 해당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부과 필요

(2) 향후 계획

- O 대학교 내 상업시설 일제 조사 실시(7월)
 - 일제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 과세 실현
- O 미부과 확인 상업시설에 대한 소급 부과 실시(10월 정기분 부과 시)
 - 미부과가 확인된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제3항에 의 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대 5년분의 부담금 소급 부과
 - 적정 부과 범위에 대한 서울시의 법률 자문 결과 통보(7월 중)에 따라 부과

※ 관련법령

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

제40조(가산금 및 독촉)

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·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.

제41조(제척기간 및 소멸시효)

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.

VI

세부 추진 계획

□ 추진 일정

- O 2016. 5월: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자료 정리
 - 건축물대장상 부과 대상 확인
 -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
- 2016. 6월~7월: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시설물 현장 전수조사 실시
- O 2016. 8월: 시설물조사표 및 미사용신고서 우편 발송
- 2016. 8월~9월: 시설물조사표 및 미사용신고서 접수 및 전산 입력
- 2016. 9월: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감률 결정
 - 교통량 감축 이행자 부담금 경감신청: 2016. 8. 10.
 -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: 경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
- O 2016. 10.10.까지 정기분 부담금 확정 및 고지서 발송
- O 2016. 10.16.~10.31.: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
 - ※ 분할납부 신청접수: 납기개시 후 5일 이내
- O 2016. 11월~12월: 체납자 관리 및 체납금 징수

◯ 세부 추진 사항

(1) 기간제근로자 활용 및 현장조사 실시

- O 채용인원: 현장조사 4명, 자료입력 및 정리 2명
- O 조사실시: 2016. 6. 1. ~ 7. 31.
- O 자료입력: 2016. 5. 2. ~ 11. 30.
- O 인 건 비: 1일 48,800원
- O 업무내용: 부과시설에 대한 사용용도 현장 조사, 납부일정 안내, 미사용신고안내,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참여, 나눔카 홍보 등

(2) 새올행정시스템 전산 자료의 현행화 실시

- 시설물 정보, 부과·수납·체납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 자료 변동사항 정리 철저
- O 연접대지 내 동일 소유자 시설물 확인을 통한 부과자료 관리

(3) 누락세원 발굴 및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납부율 증대

- O 불법사용, 준공신고 전 사용, 신·증축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처리
- O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여부 현장 확인 실시
- 고지서발급 이전 미사용시설 및 면제시설에 대한 신청안내문 발송
- O 제도 및 감면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문 우편발송 등
- O 고지서 이면을 이용한 제도운영 사항 공지 (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)

(4) 교통유발부담금 납기내 납부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추진

- O 홍보 시기: 2016년 7월 ~ 10월
- O 홍보 내용: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관련 안내 등
- O 홍보 방법
 - 관내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홍보내용 상시 표출
 - 아차산메이리, 뉴스레터, 보도자료, 케이블방송, 안내문 개별 발송 등
 - 홍보물 제작 및 배부

(5) 납부일정에 대한 SMS 문자 서비스 제공

- O 납부기간내 납부유도를 위한 'SMS문자 알림서비스' 제공
 - 알림 내용: 납부일정(고지서 발송, 납부기간, 납부종료일) 안내
 - 진행 방법: 전수조사시 시설물 실제 관리자 연락처 확인 후 고 지서 발송시, 납부종료 7일전, 납부종료 전일 3회 에거쳐 납부일정에 대한 안내서비스 제공
 - 운영 효과: 납부일정 안내를 통한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고지서 미송달 여부에 대한 불편 민원 감소

₩ 정사항

- O 징수율 증대를 위해 정확한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도록 사전 관련 자료 확인 철저
- O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주소지 재확인 후 공시송달 등 법적절차 이행
- O 사전 부과안내문 발송하여 이의신청 사전접수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
- O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서울시 제출: 2016. 11. 13.한

붙임 1. 업무처리흐름도 1부

2.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등 추진실적 서식(서울시 제출) 1부. 끝.